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당표준번호

SPS-G KHFC 0007-7262

해 당 표 준 명

욕실장

제 정 연 월 일

2019 년 11 월 일

개 정 연 월 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1. 품질경영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사내표준화·품질경영의 추진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2.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사항
(원 자 재) 1. 폴리스티렌 형재 2. 알루미늄합금 형재 3.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 겉모양 2) 치 수 3) 종 류 4) 기계적 성질 또는 화학성분	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 내 표 준 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심사사항 주요소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사항
(원 자 재) 4. 합판	1) 겉모양 2) 치 수 3) 함수율 4)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5) 안전성(유해성) 6) 휨 강도			
5. 합성수지 성형품	1) 유기질섬유의양 2) 두께 3) 겉모양	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 내 표 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 검사 (이하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6. 전사필름지	1) 겉모양			
7. 데커레이션시트	1) 겉모양 2) 인장강도 3) 신장률 4) 인열강도 5) 안전성(유해성)			
8. 거울	1) 겉모양 2) 두께 3) 접착력 4) 반사율 5) 변색방지			
9. 강화유리	1) 겉모양 2) 두께			
비고 1. 4항 합판재료의 5)안전성이란 폼알데하이드, TVOC, 톨루엔의 유해물질 방출량에 대한 안전성을 말한다. 2. 7항 데커레이션시트 5)안전성이란 폼알데하이드, TVOC, 5VOC의 유해물질 방출량에 대한 안전성을 말한다. 3. 7항 데커레이션시트 5)안전성 검사는 동일자재일 경우 치장상태로 합격이 되면 별도로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4.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5. 위 자재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사항
(부 품) 1. 경첩 또는 컵 힌지	1) 결모양 2) 치 수 3) 내식성 4) 내구성	자재의 품질기준 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 야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 를 인수할 때 의 품질검사 (이하 “인수검 사” 라 한다) 및 자재관리 를 하고, 자재 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 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1. 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5. 위 자재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사항
(부자재) 1. 접착제 2. 도 료	1) 겉모양 2) 종 류 3) 접착강도 1) 겉모양 2) 종 류 3) 성 분	자재의 품질기준 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 야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 를인수할 때 의 품질검사 (이하 “인수검 사” 라 한다) 및 자재관리 를 하고, 자재 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 과를 활용하 고 있어야 한 다.
비고 1. 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5. 위 자재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공정 · 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 행 사 항	제조작업표준
(몸 체) 1. 절 단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날의 교환시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 야 한다. 단, 각 공정의 관 리항목은 해당공 정의 제조설비 또는 작업조건에 따라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설 정 관리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 관 리를 실시하 여 그 기록 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 시할 수 있어 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 여 사용설비, 작 업방법, 작업 조 건, 작업상의 유 의사항 등을 규 정하고 이에 따 라 실시하고 있 어야 한다.
2. 접 착	① 겉모양/접착상태 (관리항목) ※ 접착조건			
3. 가 공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공구의 교환시기			
4. 도 장	① 겉모양 ② 도막두께 (관리항목) ※ 도장조건			
5. 조 립	① 겉모양, ② 조립 및 포장 상태 (관리항목) ※ 조립순서			
6. 설 치	① 겉모양 ② 설치상태/점검 (관리항목) ※ 설치방법			
비 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 거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2. 몸체의 경우 4)항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외주품의 제품검사를 주 공장 자체에서 실시하거 나 출장검사를 실시하여 단체표준수준이상으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몸체 가공설비) 1. 절단설비 2. 접착설비 3. 가공설비 4. 도장설비 5. 조립설비 6. 집진설비	1.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유회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 1. 몸체절단설비는 판넬컷터 또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춘 설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생산규모에 따라 기능·성능 및 수량은 달리할 수 있다. 2. 구멍가공설비는 부품별 가공에 적합한 충분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4. 제품 관리

심사 사항 검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SPS - G KHFC 0007 - 7262 의 검사항목	1.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단체표준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제품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자가 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제품의 조립을 외부(현지)에서 행하는 경우는 설치기준 및 방법, 주의사항, 설치 후 점검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설치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 방법과 주의사항		

비고 :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항목은 중간검사로 같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제품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5.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 측정기기 2. 선반판 지지구강도 시험기기 3. 선반판 휨 시험기기 4. 슬라이딩 문의 내구성시험설비 5. 여닫이문의 강도 시험설비 6. 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설비 7. 벽장설치강도시험설비 8. 몸체 연결강도 시험설비 9. 함수울 시험기 10. 도장막 시험설비 10.1 도장막 밀착 시험기기 10.2 도장막 방청성 시험기기 11. 촉진내후성 시험설비	○.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2. 양극산화 피막 시험설비 12.1 피막두께 시험기기 12.2 알카리 내식성 시험기기 12.3 마모성 시험기기 13. 염수분무 시험기 14. 경첩 내구성 시험기 1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기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및 분석시험 설비 17. 재료 휨 강도 시험기기 18. 재료 인장강도 시험기기	○.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 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12항(양극산화 피막 시험설비)은 알루미늄합금판 사용 시에 한함. 2. 시험설비는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과의 사용계약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검사 Lot별로 반드시 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검사, 공정 및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치수, 자재의 두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자체에서 보유 하여야 한다.	

6.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소비자 보호	◦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

7.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 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 고
				Ac	Re	
	SPS-G KHFC 0007-7262의 검사항목	재고량	2 (대표적인 것)	0	1	

비 고 1. 로트는 공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로트로 한다.

2. 인증심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에서 임의채취하고 n=2로 한다. 단, 여닫이 문의 내구성 시험은 n=1로 한다.
3.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에서 임의 채취한다.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는 n=1로 한다.
4. 채취한 시료(제품)에 제품으로 시험이 곤란한 성능시험 항목 중 목질재료(합판 등)시험, 금속부 도막시험, 경첩의 내식성 및 내구성 시험과, 데커레이션시트, 목질가공재 시험 등이 포함될 경우는 해당 성능시험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각 2점씩 채취한다. 단, 원·부자재의 시료는 시료로 채취한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8. 제품심사결과 결함의 분류

분 야	표준번호	품목	검 사 항 목	경결합	중결합	치명결합
일용품	SPS-G KHFC 0007-7262	욕실장	5. 치 수	○		
			6. 재료 및 구성재		○	
			7. 구조 및 구성재		○	
			8. 표면처리		○	
			9. 품질			
			9.1 결모양	○		
			9.2 성능			
			－ 강도 및 내구성		○	
			·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	
			· 선반판의 휨		○	
			· 슬라이딩문의 내구성		○	
			· 여닫이문의 수평력		○	
			· 여닫이문의 내구성			○
			· 설치강도			○
			· 몸체 연결 강도		○	
			－ 재료			
			· PS(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합판(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거울		○	
			· 도장막		○	
			· 양극산화피막		○	
			· 경첩(내식성, 내구성)			○
			－ 안전성(PS 수납장)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
			14. 표시	○		

9. 단체표준 인증마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제품마다	단체표준 마크표시 및 제조자 표시는 몸체전 면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인쇄하거나 금 속 또는 플라스틱 바 탕에 각인 또는 돌출 2. 인쇄 또는 각인	1. 단체표준 표시도표, 단체표 준마크 지름 10 mm 이상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단체명 6. 단체표준의 표시사항
비 고 욕실장의 인증마크는 욕실장의 대표되는 구성재의 문짝 등 전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른 표시내용은 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 준 명	종 류 또 는 등 급
SPS-G KHFC 0007-7262	욕실장	불박이식 상부장